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7
----------	------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12일

발 의 자 : 신원철 의원(1명)

찬 성 자 : 서영진, 장인홍, 박운기, 유동균,  
김인제, 박진형, 김동욱, 유 용,  
김진철, 황규복, 조규영, 우형찬,  
김태수, 최관술 의원(14명)

## 1. 제안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행정협의회의 위원을 서울시 및 교육청의 관련 실·국장으로만 구성하고 있음. 이에 의회 의원의 협의회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학교 급식 및 지진, 화재 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사항에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가.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 나. 협의회 위원에 서울특별시의원을 추가함 (안 제3조제3항).
- 다. 협의회 개최를 “1회”에서 “2회”로 조정함 (안 제5조제2항).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한 10인”을 “2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8조 중 “2인”을 “2명”으로,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를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를 “협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41조에 따라 ----- ----- -----.</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교육행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1. ~ 12. (생략)</p> <p>&lt;신설&gt;</p> <p>13.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기능) -----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u></p> <p>15. (현행 제13호와 같음)</p> <p>14. <u>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p>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공동의장 1인은 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인은 시장이 된다.</u></p> <p>③ <u>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u></p>	<p>제3조(구성) ① ----- - <u>2명을 포함한 15명</u> ----- -----</p> <p>② <u>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u></p> <p>③ <u>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u></p>

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 정책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 계획국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5조(회의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

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 정책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 계획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제4조(의장의 직무) ① -----  
-----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회 -----  
-----  
-----.

제8조(간사) -----  
----- 2  
명----- 「서울특  
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선정, 기타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관련부서의 담당 과장(담당관)과 교육협력관으로 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① -----  
협의-----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2명-----

-----  
-----.

④ -----  
----- 협의-----  
-----.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구성)에 따라 협의회 위원에 서울특별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함에 따른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5조(회의운영)에 따라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에서 2회로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0,000천원으로 연평균 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3조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 15명 중 서울특별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제외하고, 13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가정

※안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13명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임시회 2회 포함, 연간 총 4회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0,000천원



- 총비용 =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비(안제3조 및 제5조)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소계(b)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총비용(b-a)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  $\sum_{i=1}^5$  (교육행정협의회설치운영비)<sub>i</sub> = 10,000천원

- 연간 교육행정협의회설치·운영비 : 2,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2명 × 년 4회 = 800천원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른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13명은 참석수당 지급 인원에서 제외
- 업무추진경비 : 20,000원 × 15명 × 4회 = 1,200천원
-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회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는 1인당 20천원을 준용하여 추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              원동아  
 ☎ 02-3705-1285

e-mail : dongya1@seoul.go.kr